「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」[요약]

1. 추진배경

○ 가짜경유 등 **불법 석유제품의 유통이 지속**되고 있고 유가보조금·면세유 등 **관리 사각지대에서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도 증가** 추세

* 경유 반제품과 경유를 혼합하여 제조한 **가짜경유 7,380만 리터(1,000억원 상당)를 전국 35개 주유소에 유통**('17.11월)

* 농·어민에게 공급되는 면세유가 과세유로 둔갑되어 거래되거나, 석유사업자가 가짜석유를 농·어민에게 면세유로 속여 공급('17.2월)

⇨ 불법석유제품 **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촘촘한 대책을 수립**하여 **석유제품의 불법유통을 방지**하고 **소비자안전과 재정건전성 제고**

2. 주요 내용

□ (가짜석유 근절) 원료로 사용되는 **등유, 중간제품** 등 **관리 강화**

○ 경유와 등유의 혼합 방지를 위해 **제거가 어려운 신규 식별제 도입**

* 현장 실증테스트('17.8~10) 및 유해성 심사('17.12) → 품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→ 석유제품 품질기준(산업부 고시) 개정('17.12) → 시행('18.7)

○ 가짜경유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제품(정제유, 석유중간제품 등)의 위장 수입 차단과 유통 방지를 위해 **관세청과 석유관리원간 협력 강화**

- 관세청이 가짜석유 원료로 전용되는 정제유 등에 대한 **통관 정보를 매월 석유관리원과 공유**(「관세청-석유관리원간 협력 MOU」 체결, '18.6)

○ **가짜석유 신고포상제를 확대***하고 중간제품의 **수급보고 대상 세분화**

* (가짜석유 제조) 500만원 → 1,000만원 / (가짜석유 판매) 50만원 → 100만원

□ (면세유 및 유가보조금) **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집중 관리**

○ 농·어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**관계기관*** **합동점검을 강화**하고, **수협의 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품질검사 도입**

* (농업용) 농산물품질관리원-석유관리원 / (어업용) 어업관리단-석유관리원

○ 관계기관 합동 「**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협의체**」 운영, 수급 정보 공유 등 **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체계 강화**

- 국토부·지자체 합동 **유가보조금 유류**(경유·LPG) **불법행위 점검 강화**

- 유가보조금시스템과 관련 정부시스템(운전면허관리 등)간 연계 확대

□ (군납유·항공유·윤활유) **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품질관리 확대**

○ 생산단계 및 旣 납품된 **군납유에 대한 합동 품질검사 정례화**

- 군납유 품질이상 유무를 정기적으로 확인(육·해·공군 연간 각 2회)

○ **항공유에 대한 품질기준을 신설**하고 **품질검사 신규 도입**('18.하)

- Jet A-1 등 항공유에 대한 적정 품질 확보를 위해 **품질기준 마련**

-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**항공유 품질검사 근거 마련**

○ 정제광유* 70% 이상 함유에서 **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 확대**

* 광유(mineral oil) :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윤활유 제조원료

□ (불법연료 품질확인 및 LPG) **석유유통시장 검사·확인제도 개선**

○ 농·어업인과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**연료품질 확인 서비스 도입**

* 품질확인 후 공급자 역추적, 정보제공 소비자에게 가짜석유 신고포상금 지급

○ 소비자 보호를 위해 **액화석유가스**(LPG) **정량검사 도입 방안 마련**('19.하)

○ 수출용에 대한 교통세 환급을 위해 **원료사용량 현장점검 도입**

3. 기대효과

○ 가짜석유 유통, 유가 지원제(면세유, 유가보조금)를 악용한 탈세·부정 수급 등을 근절하여 **석유제품의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고 세수 증대**

* 가짜석유 유통에 따른 탈세 차단(1,075억원), 면세유·유가보조금 유류 불법유통 차단(430억원), LPG 정량검사 도입으로 피해 예방(80억원) 등 총 1,585억원

try of Trade,
try and Energy

김혜련 / 홍보담당관 / 2017-11-29 10:17:56

「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 방안」

구 분	그동안 추진현황	문제점	추진대책
가짜석유	• 석유제품 수급보고제 도입 • 용제 유통관리 강화 ⇨ 가짜휘발유 유통질서 확립	• 등유 법정식별제 제거 • 공사장, 차고지 등 이동판매 ⇨ 가짜경유 판매행위 지속	• 신규 법정식별제 도입 • 석유중간제품 수급·거래 관리 강화 • 가짜석유 신고포상제 확대
농·어업용 면세유	• 면세유 구입카드 도입 • 면세유 부정수급 단속	• 면세경유에 등유 혼합 판매 • 용도 外 사용, 타인 양도 ⇨ 불법행위 사례 지속 발생	• 농·어업용 면세유 합동점검 강화 • 면세유 취급주유소 관리 강화 • 어업용 면세유 품질검사 도입
유가보조금	• 유가보조금 카드제 의무화 • 지자체별로 지도·단속	• 카드깡, 다른 차량 주유 • 주유 후 연료 추출 판매 ⇨ 부정수급 근절에 한계	• 국토부·지자체 합동점검 강화 • 부정수급 환수금과 유가보조금 상계 •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연계 확대
관리사각지대	• 수입제품 관세청 확인 • 군납유 관리체계 미비	• 경유를 정제유로 위장수입 • 정량미달 군납유(미군) 공급 ⇨ 관리 사각지대 발생	• 석유제품 통관정보 공유 • 수입 후 가짜석유 원료전용 점검 • 군납 석유제품 합동검사 정례화
제도 미비	• 항공유·윤활유 품질검사 미흡 • 수송용 LPG 정량검사 미비	• 품질미달 항공유·윤활유 유통 • 정량미달 LPG 판매 우려 ⇨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	• 항공유 품질기준 마련·품질검사 • 모든 윤활유로 품질검사 확대 • 액화석유가스 정량검사 도입 방안 마련

Ministry of Trade,